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02.5.8>

☐ 부동산중개사무소설등록증 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☐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				처리기간
				즉시
※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·도에, 그 외는 시·군·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※ ☐ 는 해당되는 난에 V표를 하시고,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
신청인	①중개업자 종별	☐ 법인 ☐ 공인중개사 ☐ 중개인		
	②성명 (대표자)		③주민등록번호/ 외국인등록번호	
	④주소/거소	(전화 :)		
사무소	⑤명칭		⑥전화번호	
	⑦소재지			
⑧재교부 신청사유				
「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3항?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?제9조제2항?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시?광역시장?도지사 귀하 시장?군수?구청장				
구비서류	반명합판(3cm×4cm) 사진 1매			

※ 신청안내

신청하는 곳	시·도, 시·군·구	담당부서 (전화번호)	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()
		수수료	시·도 및 시·군·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(단,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)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